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0일, 한지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2.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2.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란 불법 마약류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조사기법의 일종으로,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마약류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고, 하수 유량과 하수 채집지역 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인구 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것임.
- 최근 법 개정으로 제51조의7이 신설되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보완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그간 식약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행태조사를 수행해왔고, 해당 조사 결과는 현재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강선우 의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